

의안번호 제97호

#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윌일	2018. 10. 15.

##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

의 안 번 호 제97호

제출연월일: 2018. 10. 15. 제 출 자:논 산 시 장

#### 1. 제안이유

○ 교육분야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구성 및 출범하는 「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」의 우리시 참여를 위해 「지방자치법 」제152조를 준수하여 관련 규약에 대해 논산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목적 및 기능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협의회 구성과 임원선출 및 임기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총회개최와 의결(안 제6조)
- 라. 의안제출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(안 제7조~제10조)
- 마. 그 외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(안 제11조~제16조)

#### [규약안]

##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

제1조 [목적]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·군·구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,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기능]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- 1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
- 2.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3.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4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, 시·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- 5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- 6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3조 [구성] 협의회는 "별표"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- 제4조 [임원]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 장과 사무총장을 둔다.
  -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 -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.
  -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.

-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- 제5조 [임원의 임기]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6조 [총회 및 의결]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· 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 이 경우 위임 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 [의안의 제출]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 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- 제8조 [안건의 배부]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- 제9조 [의견의 청취]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 [회의결과에 대한 조치]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 [실무협의회 등]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·도교육 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.
  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  -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- 제12조 [경비부담]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**제13조 [회계보고 및 결산]**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-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4조 [규약 개정]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제15조 [운영세칙]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- 제16조 [가입 및 탈퇴]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
  -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,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.
  -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,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효력발생)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(임기)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참고

## 행정협의회 구성 관련 법령

#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 행정안전부(자치제도과), 02-2100-3814

#### 제2절 행정협의회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〉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〈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〉

## 참고

##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현황

#### □ 출범 목적

- O 중앙(교육부)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해 관련 영역의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
- O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방정부 간 또는 교육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소통 및 교류 증진

#### □ 운영 내용 (협력 방향)

- O 중앙(교육부)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
- O 일반자치(지방정부)와 교육자치(교육청) 간 협의체계 구축
- O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운영

### □ 협의회 주요기능

- O 지방교육 협력 관련 조사, 연구, 분석
- O 지방교육 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
- O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교육부, 시도 교육청, 학교 간 협의 및 조정

### □ 진행경과

- 2018.02.12.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 모집(서울 금천구 주관)
- 2018.03.31. 창립총회 개최
- 2018.06.19. 실무회의 개최(1차)
- 2018.07.10. 실무회의 개최(2차)
- 2018.08.06. 협의회 규약(안) 결정 및 지자체별 안내
- 2018.08.27. 실무회의 개최(3차)

### [지방정부 혁신교육 10대 과제]

- 1. 교육지구 확산 및 지속운영
- 2.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
- 3. 아동친화도시 조성
- 4. 학부모회 네트워크 활성화
- 5. 학교시설 개방 및 공간 리모델링
- 6. 마을교육과정 개발
- 7. 지방정부 주도의 청소년 활동지원
- 8. 시계시민 다문화 지원
- 9. 교육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
- 10. 도농상생 급식 지원

### □ 참여 지자체 현황

(2018.08.06. 기준)

지역구분	지방자치단체명	비고
8개 광역단체		31개소
서 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강동구	16개소
인 천	남구	1개소
광 주	서구	1개소
경 기	수원시, 화성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광명시, 오산시	6개소
충 북	제천시, 보은군	2개소
충 남	논산시, 당진시	2개소
전 북	익산시	1개소
전 남	여수시, 곡성군	2개소